

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의안 번호	20986
----------	-------

요구연월일 : 2026. 9. 1.

요 구 자 : 김승수 · 유용원 · 윤용근
서명옥 · 김민전 · 김은혜
김태규 · 김기웅 · 김미애
이상희 · 박준태 · 최수진
박상웅 · 정희용 · 곽규택
임종득 · 우재준 · 박수영
최은석 · 신동욱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김준환)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같은 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같은 법 제155조(징계)제9호에 따르면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라. 국회의원 김준환은 2026년 8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출입구에서,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던 박충권 의원을 붙잡아 세운 뒤 본인이 국가정보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박충권 의원을 향해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발언하였음.

마. 박충권 의원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임. 김준환 의원이 박충권 의원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들을 가리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북한 독재체제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과 결단을 부정하고 모욕·비하한 발언임.

바. 특히 해당 발언에 이어 “조심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동료 국회의원에게 실질적인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언행임. 더욱이 김준환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대북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장까지 역임한 인사인 만큼,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원을 향한 “조심해”라는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할 것임.

사. 위와 같이 국회의원 김준환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9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